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8562호, 2004. 10. 21. 공포·시행)으로 종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던 순수기초연구업무를 이관받고, 과학기술부의 1개 과 및 정원 6인(4급 1인, 5급 3인, 6급 2인)을 이체받음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 제공>

●건설교통부령 제410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04년10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3호다목중 “제3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를 “제3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제16호”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

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1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제8조제2항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를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제1항제2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분양률·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근무하는 자
- 2.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근무하는 자

제32조제1항제2호중 “시·군·자치구의 인접 시·군·자치구”를 “시·군·자치구에 연결한 시·군·자치구”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의2중 “인접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제4항”을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로,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를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당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

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제33조제1항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및주

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을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연결한 주택건설지역”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 제19조제2항·제5항, 제3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국민주택기금수탁자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대학·공장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근거 마련(제3조제2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 (1)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억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 (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불안의 문제가 해소되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이주대책용 주택분양권에 대한 예외적 전매허용 근거 마련(제

14조의2제2항제5호 신설)

- (1)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 시점에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으로써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여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려는 것임.
-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또는 전매제한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를 허용함.
- (3)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인구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제도 도입(제19조제5항 신설)

- (1)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인구유발시설 종사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에 종사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을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및 공장의 지방이전이 촉진되어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역의 주택소유자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근거 마련(제32조제4항제5호 신설)

(1) 취락정비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타인의 토지상에 소재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려는 것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함.

(3) 개발제한구역해제 예정지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이 해소되고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건설교통부 제공>